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60
----------	----

제출년월일 : 2026. 8. 26.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 가.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 나. 창원시와 의료법인 예경의료재단 예경병원이 협약한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24. 1. 1.~ '26.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명 :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 운영)

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라)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2) 추진 필요성

가) 중독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 중독질환자에게 사회적응 훈련 및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중독질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로 사회복귀 지원

나)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 질 향상 : 정신재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 도모

다)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 : 기존 위탁기관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용자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

다. 민간위탁 사무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 1) 중독질환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 2) 중독질환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 3) 중독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4)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사업 등
- 5) 중독관련 사업기획 및 조사연구
- 6) 중독질환자와 그 가족의 교육 및 모임 지원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 관련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 1) 시 설 명 :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2) 소 재 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 3층
- 3) 기본시설 :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214m²)
- 4) 운영인력 : 6명(비상근센터장 1명, 팀장 등 5명)
- 5) 이용대상 : 중독질환자 및 가족, 일반시민
- 6) 시설용도 :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중독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 7)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7. 1. 1.~2029. 12. 31.)

○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현황

- 2004. 12. 6. 마산시 알콜상담센터 선정(마산연세병원)
- 2005. 6. 29. ~ 2011. 12. 31. 마산알콜상담센터 위탁운영(마산연세병원)
- 2012. 1. 1. ~ 2014. 12. 31. 공개모집 위탁운영(현대사랑병원, 3년)
- 2015. 1. 1. ~ 2017. 12. 31. 재계약 위탁운영(현대사랑병원, 3년)
- 2018. 1. 1. ~ 2020. 12. 31. 공개모집 위탁운영(예경병원, 3년)
- 2021. 1. 1. ~ 2023. 12. 31. 재계약 위탁운영(예경병원, 3년)
- 2024. 1. 1. ~ 2026. 12. 31. 공개모집 위탁운영(예경병원, 3년)

바. 민간위탁 예산 : 금359,056천원(2026년 본예산 기준)

구 분	예산액(천원)	비 고
합 계	359,056	- 국비 166,753천원 - 도비 35,050천원 - 시비 157,703천원
인건비	268,506	
운영비	31,000	
사업비	60,000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재계약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질환자의 재활 및 중독 정신 건강문제 예방·조기 발견 등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정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자. 성과평가 결과

구분	평가 결과	투입(20)		과정(20)		산출(50)		활용(10)
		인력(10)	자원(10)	준수성 (10)	노력성 (10)	프로그램 (30)	지역사회 사업(20)	피드백 (10)
점수	90.3	10	9.3	10	10	25	16	10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붙임1)

나. 성과평가 결과(붙임2)

다. 관계법령(붙임3)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의견	비고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해당 사무는 중독질환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재활교육 등을 지원하는 전문 영역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상시적·전문적 인력 투입이 필수적인 사무로, 직영 운영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장기적 인력 운영의 한계 등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민간위탁 및 직영 운영 모두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은 동일하며, 직영 운영의 경우 고용보장의 안정성은 있으나 민간위탁 운영에 비하여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것으로 판단됨	
③ 경제적 효율성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를 국비에산으로 사용할 수 없어 시 예산확보 부담이 발생되므로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지속적·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분기별 운영위원회 개최로 사업실적 및 목표 보고 등을 통해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⑥ 사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며, 분기별 예산집행현황 보고 및 상·하반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투명성 있는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지방자치단체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학과 보유 대학을 중심으로 위탁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국 현황(2025년 기준) : 57개소(직영 5개소/위탁 52개소))	

붙임 2

성과평가 결과 : 90.3점

(평가대상기간: '24.1.1.~'26.6.30.)

분야	평가 항목 (점수)	평가기준	확 인				비고
			양호 (10)	보통 (8)	미흡 (6)	해당 없음	
투입	인 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				
		③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적정임금,근로시간,연차 등)	√				
	자 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 (시기, 방법 등)	√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				
		② 외부자원 (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				
산출	사업성과 달성(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률 확인		√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⑤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① 투입 분야

○ 인력

- 관련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이용자 수 대비 적정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 인건비 기준에 따른 근로조건 유지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자원

- 예산집행이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분기별 운영위원회 및 e나라도움 예산 검증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 센터 시설 및 기자재를 활용하여 재활프로그램, 단주 기념식 등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었고, 지역사회 전문가 및 유관기관 자원 활용에 적극 노력함

② 과정 분야

○ 준수성

-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이행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기록을 MH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또한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도 준수하고 있음

○ 노력성

- 창원보호관찰소,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자원 발굴 노력과 기관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③ 산출 분야

구분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2026년 (6.30.기준)
맞춤형 프로그램	중독조기발견 및 중독상담	5,819건	6,418건	2,721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909건	889건	464건
	중독질환 관리사업	2,797건	2,920건	1,255건
지역사회 사업	중독폐해 예방교육 및 캠페인	34,652명	30,732명	11,322명
	인식개선 및 중독예방	559건	592건	248건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59건	54건	26건

○ 맞춤형 프로그램

- 전반적으로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이 우수하며, 중독상담, 선별검사, 사례관리서비스, 재활프로그램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일정이 하반기에 몰려있어 상반기 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으로 달성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대책 등 자체 평가가 필요해 보임

○ 지역사회사업

- 대학생 · 청소년 · 직장인 · 노인 특성에 따른 4대중독 예방 캠페인 및 교육 실시로 중독질환자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역자원 개발 및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함

4 활용 분야

○ 피드백

- 프로그램 종료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선을 실시함
- 연도별 자체 성과점검 및 내부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9., 2025. 3. 25.>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2021.12.3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